

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11. 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(2007. 5. 11, 법률 제8423호)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2007.10.4, 대통령령 제20306호)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근거법령 조문 변경 (안 제1조, 안 제3조, 안 제7조 및 안 제9조)
- 나. 제명 띄워쓰기 및 「」표기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 : 4쪽 ~ 5쪽
- 나. 예산조치 : 비예산
- 나. 기 타
 - 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 - 2) 입법예고 :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

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”를 “속초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4조”로 한다.

제3조제4항중 “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2조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중 “지방공기업법 ”을 “「지방공기업법」으로 한다.

제9조중 “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4조 제3항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,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</u> 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정수·선임·운영 및 실비보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 <u>지방자치법</u> 」 제134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4조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~③(생략) ④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, 그 방법은 <u>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</u> 의 규정에 의한다. ⑤(생략)	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~③(현행과 같음) ④----- ----- 「 <u>지방자치법 시행령</u> 」 제82조----- ⑤(현행과 같음)
제7조(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) ①(생략) ② <u>지방공기업법</u>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,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 검사는 <u>지방공기업법</u>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.	제7조(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) ①(현행과 같음) ② 「 <u>지방공기업법</u> 」 제2조----- ----- 「 <u>지방공기업법</u> 」 제35조 ----- -----.
제9조(검사 의견서의 제출) <u>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</u> 의 규정에 의한 검사 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.	제9조(검사 의견서의 제출) 「 <u>지방자치법 시행령</u> 」 제84조제3항의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관련법규 발췌

지방자치법

[개정 전]

제125조 (결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[개정 99·8·31]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시·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[개정 99·8·31]

③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개정 후]

제134조 (결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방자치법시행령

[개정 전]

제46조 (결산승인)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99·12·31]

제47조 (결산검사사항) ①검사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세입·세출의 결산
2. 계속비·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
3. 채권 및 채무의 결산
4. 재산 및 기금의 결산
5. 금고의 결산

[개정 후]

제82조 (결산 승인)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

제84조 (결산 검사 사항) ①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세입·세출의 결산
2. 계속비·명시이월비(明示移越費)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
3. 채권 및 채무의 결산
4. 재산 및 기금의 결산
5. 금고의 결산

②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③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.